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86

발의연월일: 2020. 8. 20.

발 의 자:김성주·권칠승·고영인

허종식 • 이탄희 • 윤준병

이상헌 · 김원이 · 신현영

강선우 · 송재호 · 서영석

최혜영 · 정필모 · 이학영

한정애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적·악의적으로 불이행하며 대규모 확산 위험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인지하고도 그 의무를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검사대상자에게 검사회피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 확진자임을 인지하고도 치료시설을 이탈해 도주하는 등의 행위 등은 고의적·악의적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를 키우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

이에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그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 치 이행 의무를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의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고의적·악의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의5 및 제8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5(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 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한도에서 제3자에 손해배 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2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제79조의3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0조의5(손해배상청구권) 보건
	<u>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u>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
	산 우려가 커져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비용
	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
	의 한도에서 제3자에 손해배상
	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u><신 설></u>	제82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특
	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집단이나 단체의 이
	익을 목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
	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
	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u>가중한다.</u>